

### 3.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Incoterms 2020 개정사항 반영

-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(5)-㉔에 기재되어 있는 Incoterms 2000과 Incoterms 2010을 Incoterms 2020으로 수정(별표)

### 4. 수출신고와 관련된 관세법, 행정규칙 개정(폐기) 사항 등 반영

- 「관세법」 제250조 제4항 신고취하 승인기간(1일→10일) 개정('20.12.22 신설)사항\* 반영(제27조 제2항)
  - 수출신고 취하 승인(신청)서 서식을 마련하여 수출신고 정정/적재기간 승인(신청)서 서식(별지 제2호 서식)과 분리(별지 제2호의2 서식)
  - \* (별지 제2호 서식): 수출신고 정정/적재기간 연장승인(신청)서 (1일)  
(별지 제2호의2 서식): 수출신고 취하 승인(신청)서 (10일)
- 기획재정부훈령 「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」 폐지('05.08.18) 반영(제22조 제1항)
- 비공개 훈령\*적시 조항 및 문구 삭제
  - \* 「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」

### 5. 수출신고필증 및 간이수출신고필증 서식 하단 기재사항 변경

- 적재기간이 경과된 반송신고수리물품에 대한 신고수리 세관장의 조치 예정사항 추가
  -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신고물품을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됨과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재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관세법 제251조, 제277조)  
또한, 휴대탁송 반출 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(부두, 초소, 공항)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  - 반송신고서 표출
    - 1) 반송신고수리일로부터 신고물품을 30일 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법에 따라 국외반출 또는 신고취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.(관세법 제263조) 또한, 휴대탁송 반출 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(부두, 초소, 공항)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    - 2)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 
(<https://unipass.customs.go.kr>)
-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 변경([portal.customs.go.kr](http://portal.customs.go.kr) → [unipass.customs.go.kr](http://unipass.customs.go.kr)) 사항 반영

## III. 시행(예정)일자

- 2023년 11월 21일  
단, 제27조제1항 및 제48조제4항 개정내용, 별표 8호,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1호의2 개정서식은 전산 시스템 등 보완 후 별도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

## IV. 의견 제출

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.11.21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제출방법: 이메일([namgo8520@korea.kr](mailto:namgo8520@korea.kr)), 팩스(042-481-7819)
- 제출처: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
- 담당자: 민경옥사무관(042-481-7825), 남기오주무관(042-481-7802)

- 아 래 -

개정안	수정안	사유

## | 첨부자료 (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.)

- [붙임 1] 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입안계획서
- [붙임 2] 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신규조문대대표
- [붙임 3] 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안 전문

## | Contact



강민주 관세사  
T 02-6011-3073  
E mjkgang@esein.co.kr



성단생 관세사  
T 02-6011-3021  
E dsseong@esein.co.kr



장수한 관세사  
T 02-6011-3091  
E shjang1@esein.co.kr